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1303 발의연월일: 2021. 7. 2.

발 의 자: 백혜련·김남국·김병욱

김승원 · 김윤덕 · 김홍걸

문정복 • 민병덕 • 민형배

박성준 · 서영석 · 소병훈

양이원영 · 오영환 · 윤후덕

이학영 · 이해식 · 임종성

전용기 · 정성호 · 정정순

주철현 · 한준호 · 홍정민

의원(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7월 21일 용인 물류센터에서 화재로 사망 5명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물류센터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냉장·냉동 창고시설에 대해서도 소방시설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현재 노유자·의료시설에 한해 강화된 소방시설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냉동·냉장창고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4호 신설).

법률 제 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창고시설(냉동·냉장 창고시설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 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
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	례) ①
장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	
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	
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	
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	
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	
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	
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창고시설(냉동・냉장 창고시설
	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
	<u>하는 것</u>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